

2012 교단총회공동대위 정책포럼

교회와 세금

일시: 8월 30일(목) 오후 2시

장소: 청어람 5실

교단총회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방인성·전재중·정은숙·최호윤

순서

사회: 남오성 국장(교회개혁실천연대)

2:00	발제1: 세금의 속성	최호윤 회계사_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제일회계법인	3 page
2:30	발제2: 목회자와 세금	박기성 세무사_ 세무법인 세울	page
3:00	발제3: 교회와 수익사업	박광현 회계사_ 우리회계법인	page
3:30	질의 및 토의	사회자	

교단총회 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 교회개혁실천연대)

Tel. 02-741-2793

Fax. 02-741-2794

E-mail. protest@protest2002.org

(150-034)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34길 10 영남빌딩 205호

■ ■ 발제 1

세금의 속성

최호윤 회계사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제일회계법인

들어가는 글

올해 초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시작으로 목회자의 소득세 신고가 다시 세간의 관심사가 되었고, 서울시 강남구청 관할 교회와 기독교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추징과정을 보면서 카페를 운영하던 중소형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궁극적으로 교회와 세금의 관계, 목회자와 세금의 관계에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는 현상은 교회가 개독교라는 비아냥을 들으며, 교회가 외치는 복음과 행하는 선한 사업마저 일반 사회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진행되는 많은 논의는 사회법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혜택을 목적으로 설득하는 등 논의가 주로 사회법에 기반을 둔 문제제기에 대한 대응적 대응을 하면서 정작 중요하고 기준이 되어야 할 하나님과 예수님의 ‘공의와 사랑’의 정신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안타까움을 가지며, 사회법에서 인식하는 세금에 관한 개념과 성경의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풀어야할지를 고민한다.

사회법적 관점에서 본 세금의 변천

일반적으로 세금을 ‘국가 권력이 국민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때로는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걷는 금전’으로 이해하고 있다.

세금(조세)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하여서는 역사적으로 국가와 국민간의 계약에 의한 국민의 부담이라고 보는 국가계약설(國家契約說), 조세는 일차적으로 개인소득의 감소를 가져오지만 국가의 생산적 지출을 통한 개인의 이차적인 생산력을 증대

시켜준다는 국가생산설(國家生産說), 지배계급의 권력에 의한 국가착취설(國家搾取說), 사회변동속에서 형성된 피조물로서의 국가진화설(國家進化說)과 같은 논의가 있어 왔다.

또한 조세부과의 근거로 공공수요를 부담하는 공공수요설(公共需要說), 개인의 존재에 선행하는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설(義務說),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유무형의 공공재편익대가로 본 이익설(利益說),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국가는 국민에 대한 보험자이며 국민을 국가에 대한 피보험자로 보는 보험설(保險說) 등이 있지만 각각의 주장에는 장단점이 모두 있다.

조세생성의 역사적인 발전단계를 살펴보면 고대시대 희랍의 조세제도는 자발적인 납부, 간접적인 과세, 납세대리인에 의한 징수로 특징 지워지며 로마시대에는 재정수입을 외국 전승지 내지 식민지로부터 조달하였으며 로마인은 비상시에 한해 부과되는 인두세를 부담하였으나 Augustus 이후에는 정부가 재산세, 토지수득세(土地收得稅) 및 인두세(Capitatio)를 부과하였다.

중세봉건시대에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국민들이 경작하고 이에 대한 지대를 왕에게 납부하였었고, 교역의 발달과 군대를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각한 후 지대를 대신하기 위한 세금으로 변천한 것이 근대조세국가형성의 본질이 되었다.

근대법치주의의 시발점인 Magna Carta는 의회의 승인 없는 국왕의 과세권을 제한하여 재정민주주의(財政民主主義, 租稅法律主義)가 싹트기 시작하였고, 미국 독립전쟁의 시발이 된 보스턴 차 사건도 영국이 부과하는 세금에 대한 조세저항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는 왕을 두지 않고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체도를 만들게 되었다.

대의기관이 정하는 법률, 왕(또는 대통령)이 만드는 명령, 법률이 명령보다 우위에 있다는 근대법치국가의 3대원칙은 현대국가생성의 기초가 되었다.

동양에서 주나라의 토지제도는 정전제로 공동노동으로 경작하는 공전(公田)을 정하여 그 수확물을 국왕에게 지대의 형태로 납부하였으며, 진한시대에 들어와서는 토지사유제(私有制)를 허용하면서 봉건적 전조(田租)를 징수하였다.

고대 우리나라의 조세제는 공동체적 집단소유기초위에 토지구유제의 영향을 받으며 일정 토지면적을 부여받은 농민은 전조(田租)를 국가에 납부하고 부역노동에 수시로 응해야 하였다. 삼국시대에서는 지배자와 피지배층과의 공납관계에서 비롯되었으며, 중앙집권적 봉건체제를 형성한 통일신라 및 고려시대에는 문무관료에게 경작할 농지를 나누어 주고 관료는 당대의 전조(田租)징수권을 가졌고, 농민에게는 정전(丁田)을 주어 매년 전조(田租)를 징수토록한 토지지배중심의 봉건제도였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이후 일제시대를 겪으며 대륙법체계를 수용한 일본의 체제를 가져와서 현재의 조세 체제의 골격을 이루었으며 우리만의 조세체제 정립은 진통을 겪으며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조세에 관한 동서양의 발전과정을 돌이켜 보면 조세부과라는 국가행위(통치수단) 이전에 이러한 주권재민(主權在民)의 관점에서 법치국가의 형성에 맞추어 발전하였다는 점이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전에는 지배층의 통치수단으로 사용되었지만 법치국가가 형성되면서 국민의 대의기관에 의하여 결정된 법률에 의하여 구성원이 부담할 세금이 결정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승지(戰勝地)/약탈지로부터의 경비조달을 제외하면 동서고금의 상황에서 세금이 국가라는 조직의 운영경비를 조달하는 재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사회법에서 보는 교회의 성격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인 사단(社團)으로 분류되며, 법률행위 주체 관점에서 보면 민법 32조에 근거하여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의 승인으로 설립된 교단이 있고, 교단에 소속된 산하교회로서 지역교회가 있다. 개별 지역교회의 구조가 간단하다고 할 수 있으나 법률행위 주체의 관점에서 법인격이 없으므로 법률행위, 특히 재산권 소유와 행사과정이 복잡하다.

지역교회 자체로는 법인격이 없으나 부동산 등기와 세무관리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교회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교회는 제외), 교단 소속 지역교회는 세법상 종교법인으로서 비영리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즉, 세법에서 인정하는 종교, 자선, 학술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중의 하나에 해당하며, 같이 열거된 자선단체, 학술단체와 동등한 세법의 혜택과 의무(결산서 공시와 외부감사는 제외)를 부담한다.

절대자를 인정하는 기독교와 일반 종교와의 근본적 차이로 인한 배타성이 때로는 교회로 하여금 차별적 성민(聖民)의식을 가지게 한다.

교회 스스로 차별적 성민의식을 가질 수는 있으나 사회에서는 이러한 차별적 성민의식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 비영리법인중의 하나로 볼 뿐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성경을 근거하여 교회의 특별성을 주장하는 것은 교회를 사회로부터 분리하려는 시도가 될 뿐이며, 교회가 진정 사회를 구원하려면 사회가 인식

하는 수준으로 낮추고 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사회법관점에서 다가가야 한다.

성경에 나타난 헌금(제물, 연보)과 세금

1) 율법이전

아벨과 가인의 제사시 드린 제물, 족장시대의 아브라함과 야곱의 십일조 개념이 등장하나 율법 이전의 헌물과 십일조개념이다.

2) 율법시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구약시대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제물로 드리는 헌물이 제사의 종류에 따라 다양했으나 이스라엘백성이 죄의 용서를 받고 백성과 하나님사이의 화목, 백성들간의 화목을 위한 제물이라는 점에선 동일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나라 백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현대 교회에서 헌금/재정의 사용처가 하나님과 하나님나라백성(공동체)의 화목,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화목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헌금/교회재정과 세금의 상관성을 찾을 수 있다.

3) 왕정시대

구약의 헌물은 화폐경제의 발달에 따라 시간적 공간적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화폐로서의 헌금으로 변천되었으며, 정치구조의 변화에 따라 제정이 분리된 왕정시대부터 비로소 종교활동으로서의 헌금과 국가운영을 위한 세금이 구분되기 시작했다.

왕정시대 이전까지의 공동체 비용은 제사를 위한 레위지파의 운영비에 국한 되는 개념으로 제물과 헌물이 드러졌으나 왕정시대부터 이스라엘은 제사 및 레위지파를 위한 제물과 공동체 국가 운영을 위한 세금을 구분하였다.

왕정시대를 지나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현대시대는 하나님나라 백성으로서 드린 연보(헌금)와 일반국가 백성으로서 납부한 세금의 사용처가 엄격히 구분되고 있다.

교회공동체와 개인에게 맡기신 재물의 관리자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연보(헌금)와 세금의 속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신정일치시대에는 헌금의 정신을, 신정분리 구조의 왕정시대 이후의 헌금사용에 대해 찾을 수 있다. ‘제물, 제물/연보, 제물/연보/세금’의 단계로 확장된 변천과정에서 표면적으론 교회 또는 국가에 드리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론 하나님께 드러진 재

정의 사용처 속성을 검토하는 것은 교회 재정과 세금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게 한다.

공적 부조로서의 재정(연보, 현금)

제물과 현금, 연보 등의 사용에 관한 성경구절과 내용을 열거해보자.

(민7:5)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신14:26)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 할 것이며..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신 26:11)

(신14:28~29) 매 삼 년 끝에 그해 소산의 십분의 일을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신26:12)

(행 4:35)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행 6:2)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서....

(롬15:26)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행11:29)(행24:17)

(고후 8:3~4)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

(고후 9:11)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고후 9:13)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

(고후8:13~14)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함이다.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함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함

제물과 교회 재정의 사용방향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공동비용인 레위 지파를 위하여 지출되고, 나아가서 유대 공동체와 이방을 위한 공적부조의 용도로 확장되었다.

교회 재정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하나님나라 백성인 공동체 성을 근거로 약한 지체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섬기고 분담하는 방향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국가 구성원을 중시하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세금의 성격이 공적비용의 분담

이라는 1차적 성격에 국한되며 발전함에 비해 연보(헌금)는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의 공동체 운영비용 차원을 넘어 공동체 구성원의 공적부조 역할을 담당한다는 차원에서 교회가 드러진 재정(연보, 헌금)은 세금의 성격을 포괄한다고 하겠다.

재정관리의 청지기적 관점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시는 재물을 잘 관리할 청지기적 책임감이 있다. 세금납부가 청지기적 사명을 완수하는 것에 반하는가? 우리는 세금에 대해 스스로에게 엄격한 잣대를 가져야 한다. 세상법이 교회법에 우선할 수 없기에, 교회와 목회자가 선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이 선교의 재원을 축내는 것 이기때문에 재정의 청지기로서 세금을 낼 수 없다면 다음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 교회와 목회자가 공공부조로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성경의 근거가 무엇인지?
-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지키려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나라에 도움이 되는가?
- 세금에는 직접 부담하는 직접세와 물품 구매시 부담하는 간접세가 있는데, 일상 구매활동에서 부담할 간접세 부담을 거부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중지할 것인지?
- 경제활동에서 부담한 간접세는 하나님 나라 재원을 국가가 약탈해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회수하기 위한 종교적인 투쟁을 왜 하지 않는지?
- 간접세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고 직접세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은 청지기로서의 무지와 나태함 때문이 아닌가?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의 재물로 사람을 얻지만(눅 16장) 교회는 선한 재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고 사람도 얻지도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다.

청지기는 청지기의 기준이 아니라 주인의 기준으로 재물을 관리해야 한다. 청지기 입장에서 낭비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주인의 뜻에 합당하다면 지불하고 소비해야 한다.

사울이 반드시 멸해야 할 것들 중에서 제사에 사용하겠다고 아말렉의 아각왕과 기름진 양, 소를 남겨둔 것 때문에 여호와가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 사건(삼상 15장) 등은 오늘날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회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관점 때문에 세상이 교회에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세금을 이웃사랑의 최소한의 실천이라고 인식하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선교의 필요비용으로라도 인식해야한다. 세금은 최소한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선교의 필요비용이다.

선민(選民)의식과 성민(聖民)의식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라는 율법의 명령과 달리 그리스도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며 오른 뺨을 치거든 왼 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율법시대적 인과응보 대응이 아니라 은혜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기를 요구하신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과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교회는 억지로 당하는 부당함일지라도 그것을 감내하고 품는 사랑이 있을 것을 요구하시지만 현대 교회는 사회의 정서적 관점이 아니라 교회 스스로의 논리로 인과응보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근간으로 하는 개신교가 다시 성숙을 구분하면서 교회와 목회자의 영역을 일반 사회와 일반 직업과 대비하여 성스러움으로 구별하려는 성민(聖民)의식이 ‘교회가 좋은 일을 하니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 해달라’고 말하는 순간 교회는 거룩함으로서의 구별이 아니라 말만 앞세우는 이기적 집단으로 구분된다.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의 ‘배제’이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틈으로 들어가셨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다. 오로지 죄인인 우리들을 품고 사랑하고 회복시키시려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요구하신다.

현행 세법구조상 교회의 수익사업과 목회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불공평하거나 부당한 것은 아니다. 세상이 공동체적 의사결정으로 교회와 목회자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백보 양보하여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금이 부당하다고 할지라도 회복을 위하여 당연히 부담해야할 세금인데, 부당하지 않음에도 특

별함을 내세워 세금을 무시한다면 세상은 교회와 목회자를 무시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의 차별적 선민(選民)사상은 이스라엘의 붕괴를 가져왔다.

교회의 차별적 성민(聖民)사상은 교회가 파고 들어야 할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켜, 후에는 그 맛을 잃어버려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까 두렵다.

나가는 글

세금이 일반 사회 국민들의 정서감정에 중요한 이유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세금은 국가의 존재기반이 되며, 국가라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인 국민은 어떤 형태로든지 공동체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복음사역 이전에 구성원으로서의 분담(分擔)이다.

국가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비용분담 성격인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다른 구성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가 되며, 세금을 분담하는 것은 다른 구성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이웃사랑의 소극적인 실천행위’이다.

교회는 세상이 하라고 하지 않는 구제와 선교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러면서, 세상이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세금을 외면한다면....

당연하다고 요구하는 부담은 하지 않으며, 요구하지 않은 부담을 하며 사랑을 전할 때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교회가 행하는 사랑의 행위들을 ‘쇼’라고 비하하고, 그 사랑의 진정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세금은 논리적 산출물이 아니라 정책적 의사결정의 결과물이다.

공동체의 공감을 토대로 과세할 수도 있고 면세할 수도 있다. 세법이 교회와 목회자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교회의 선한 사업이 사회 공동체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백보 양보하여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세금일지라도 사회가 요구하기 때문에 납부하는 것은 교회가 사회와 공감하고 그들과 접촉하는 출발점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교회가 전하고 선포하는 내용에 신뢰성과 설득력을 부여한다.

창조주의 아들임에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시며 소외되었던 이방인, 죄인들을 찾아오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교회가 회복하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다.

■ ■ 발제 2

목회자와 세금

박기성 세무사 / 세무법인 세울

1. 국민구성원으로서 위치와 교회 직분자로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견지해야 할 점

가. 국민구성원으로서 목회자의 세금납부의무는 당연하다.

세금의 속성은 '국가'라는 공동체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자금을 공동체 구성원인 국민들이 분담하는 비용으로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어느 일방이 분담을 회피하게 되면 다른 누군가가 반드시 그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본인이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지 결과적으로는 다른 누군가에게 부담을 지우게 된다.

소득세는 소득의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수직적인 공평을 도모하고 있으며, 소득이 일정수준(면세점)이하인 경우 세금납부를 면제할 뿐만 아니라 2008년부터는 가구당 연간소득이 1,700만원이하인 경우 국가가 장려금(근로장려제세)을 지급하므로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금 납부부담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국가로부터 장려금까지 받게 된다.

1) 국민개세주의 합치여부(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명제 관련)

납세의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의무로, 국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이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이다. 헌법 제2장 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는 국가가 보상없이 국가 활동의 기초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일방적·강제적으로 부과하는 모든 경제적 부담을 의미한다. 여기서 국민에 대한 과세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조세공평주의'가 과세의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될 수 없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헌법 11조는 규정하고 있다.

2012년 2월 27일 종교인 과세에 대해 19세 이상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더플랜 코리아에서 조사한 국민인식을 보면, 국민 64.9%(47.3% 전적으로 찬성, 17.6%는 대체로 찬성)가 종교인 세금부과 찬성하고 있으며, 종교별로는 천주교 신자 71.4% 찬성, 불교(69.8%), 개신교(60.4%)찬성하고 있어 종교인과세에 대한 국민적의견은 과세의 정당성을 대변하고 있다.

2) 입법적 근거-조세법률주의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조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법률에 의해서만 과세할 수 있다는 '조세법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교인의 근로로 인한 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규정이 없으므로 현재의 법규정으로도 과세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3) 이중과세 방지원칙 위배여부

이중과세란 동일한 과세기간에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두 개의 동일 또는 유사한 조세가 부과되는 것을 말하며, 이중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와 세목이 같아야 하나, 즉, 교인들이 각자의 세목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후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성직자 사례비는 소득의 귀속 주체가 각각 교인과 성직자로 구별되고, 소득의 성격과 세목도 각각 다르므로 교인들이 납부한 세금과 성직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성직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별개의 납세인 것이다. 따라서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목회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견지해야할 점

각 교단 헌법에서 목회자는 교회의 항존직원으로 분류하고, 직무와 권한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목사는 그리스도의 양(羊)인 교인을 감독하는 목자며(렘 3:15, 뱀전 5:2~4).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리스도의 사역자라 하며(빌1: 1, 엡4:11, 고전4:1),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이므로 교회의 사자라 하며(계 2:1),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죄인에게 전파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라 권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혹은 복음의 사신(고후 5:20, 엡 6:20) 등이라 하며 목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현대 학자들이 내린 전도(선교)의 정의는 크게 세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전도는 참여, 선포, 설득의 개념을 포함하며,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광의의 전도개념을 통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¹⁾

일방적인 설교를 고집하는 고압적이고 개성을 무시하는 식의 전도 이미지에 대해 당연히 거부감이 생긴다. 몇몇 학생들은 ‘전도’란 말이 그저 영적인 세뇌를 경건함으로 가린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전도 방법이 오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이러한 염려는 WSCF(세계기독교연맹, World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회원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염려가 되어야 한다.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전도자가 복음을 듣는 사람들과 하나 되고, 그들의 문화와 문제를 파악하며, 똑같은 인간으로서 그들을 사랑하며, 복음이 그들과 관

1) Bee korea, 『전도와 제자양육』,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9) 25-35 요약

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등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를 밟아야만 한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 실제적, 문화적, 인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참여’는 전도에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참여로 그친다면 전도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여기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이 관련되어 있다. WSCF 보고서는 ‘믿음의 확실성과 목적의 확실성, 믿음을 개념화할 수 있는 능력’에 뚜렷한 반감을 표시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말로 전달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갖는다.

하비 콕스(Harvey Cox)는 ‘사회 활동과 전도를 구별해 놓은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했다(1966년 Fiske에서 인용). 콜린 윌리엄스(Colin Williams)도 ‘개인 전도와 <사회> 변혁을 요구하는 전도를 구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동의한다. 이것이 ‘참여 전도’이다. 선행과 자선의 성격을 지닌 그리스도인의 소리 없는 참여를 ‘전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와그너는 ‘참여’ 전도에 관련된 복음주의 입장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여를 필요로 하지만, 그것이 선포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전도가 아닙니다. 선포의 측면에 확고히 서 있는 사람은 선행과 이웃 사랑이 교회 사역에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참여가 첫째로 복음이 선포된 대상과 하나 됨을 이루기 위해, 둘째는 물질적 도움과 사회 개혁을 모두 포함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 주기 위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선행은 복음을 확증해 준다. 선한 일들은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마 5:16) 될 때 부산물로서 전도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영국의 팩커(J. I. Packer)이다. 그의 책 Evangelism and the Sovereignty of God(전도와 하나님의 통치)는 널리 읽혀졌는데, 특별히 영국과 미국 대학생들에게 많이 읽혀졌다. 그는 1918년 영국 성공회 대주교 위원회가 내린 전도의 고전적인 정의를 인용하며 서두를 연다. 이 정의는 우리가 ‘설득 전도’라 부르기로 한 것에 대해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다. 전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교회의 친교 가운데 자신의 왕으로 섬기게 하는 것이다.

성직자는 위의 전도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다. 국방의 의무와 함께 납세의무는 고전적 2대의무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같이 당연히 짊어져야 할 의무이다. 그런데 공동체의 가장 근본적인 의무인 납세의무를 실행하지 못하여 참여전도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그 다음의 선포와 설득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전문직의 탈세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우리는 국민 구성원으로서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그들에 대해 좋지 못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감정일 것이다.

국세청이 목회자의 탈세제보를 접수하게 되면 이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법적 근거는 없다.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하여 조세법처벌법에 의항 검찰에 고발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2. 목회활동관련 근로자의 개념과 세법상 근로와의 구분

목회자의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목회자들에게 지급하는 사례비는 교회를 섬김에 대한 사례이므로 갑근세는 부당하다는 견해와 현대사회의 윤리적관점에서 목회자들의 납세는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양립된다. 우리나라 세법상 교역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수입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으나 교역자들이 생활비를 받는 데 수입없는 사람이 되어 영세민 혜택을 받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다. 목회자의 사례비에 대하여 공익적 종교활동에 대한 결과물로서 지급받는 것이므로 목회자의 세금부과에 따라 종교의 자유에 침해가 가져올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구성원모두가 부담해야한 최소한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라는 용어와 ‘근로자’의 용어는 서로 다르게 사용된다.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통칭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1항)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은 ‘근로자’ 소득이 아니라 ‘근로’ 소득이다. 즉, ‘근로자’가 수령하는 소득이 과세대상인 것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세비·임금·상여·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소득세법 제20조 1항)가 과세대상이다.

이런 관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인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받는 봉급은 근로소득으로 보며,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개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데 소득을 분류하여 소득을 재분배를 효과적으로 하려는 목적을 정책적으로 법률에 반영하고 있다. 성직자의 용역제공이 과연 교회와 별도로 독립적인 것이냐? 교회에 종속되던 것이냐?의 문제와 급여의 성격이 대가성이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목회자는 교회의 항존직원으로 교회에 종속되어 있으며, 사례비의 대가관계는 당연히 성립되어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이라는 의미로서 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시면서 일하는 자로 불러주신 거룩한 소명이다. 따라서, 성직자이든 일반인이든 각자가 수행하는 역할은 ‘근로’로서 거룩한 사역이며, 성직자가 수행하는 역할은 세법상 근로에 해당된다.

3. 실정법상 성직자의 사례비 과세에 대한 평가

누군가로부터 금전을 수령하는 원인은 대가성이 있거나 아니면 대가성이 없거나 두가지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대가성으로 수령하는 것이라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성이 아니라면 증여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하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소득세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어떤 소득을 과세대상소득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따라 소득원천설과 순자산증가설이 있는데 이중 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을 택하고 있으며, 소득세는 소득원천설을 택하고 있으며 일부 예외적으로 순자산증가설로 보완하고 있다. 사업소득인 경우 계속적,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 과세한다. 따라서 고정자산처분이익,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의 일시적인 소득은 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소득이지만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소득세법 제4조)

1)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와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이 해당하며(소득세법 제20조 1항) 다음 항목은 비과세소득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소득세법 제12조)

- 제공 받는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실비변상적 금액

2) 기타소득

소득세법 21조는 기타소득으로 여러 가지 항목을 열거하고 있으며 종교인과 관련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소득세법 제21조)

- 사례금(1항 17호)
-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1항 13호)

위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종교인이 수령하는 급여 등이 대가성으로 수령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근로소득외의 사례비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사업소득

종교인이 소속된 기관이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정한 법인으로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종교기관이 받는 기부금은 공익법인에게 부여하는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며, 점술인등(표준산업분류코드:96992)이 수령한 현금 등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소득세법 제19조 1항 18호)

<표1> 소득원천별 소득 분류(소득재분배를 목적)

총 합 소 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자	배당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산림소득 포함)	근로	연금	기타		장기간보유예정 -단기 : 부동산매매업
금융자산 비용불인정		실물자산 비용인정			단기/장기로 구분		으로 사업소득

- * 계속적, 반복적 사업성이 있는 것 :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산림소득 포함)
- * 노동이 종속적이면 근로, 연금, 퇴직소득으로, 독립적이면 사업소득(인적용역)

- 근로소득의 분류
 - 독립적 : 일시(인적용역-기타소득), 계속(사업소득-인적용역)
 - 종속적 : 일시(일용근로소득), 계속(재직중이면 상용근로소득, 재직후 일시불 퇴직소득, 연금형태이면 연금소득)
- 기타소득은 최후, 보완적으로 적용한다.

나. 증여세

상속세법및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영리법인을 제외한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1항)

증여세 과세에 대한 예외로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2항),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념품·축하금·부의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을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으로 열거하고 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시행령 제35조).

즉, 종교인이 받는 금품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4. 기재부의 세제개편안 관련 흐름(조세일보 2012-8-13 기사를 중심으로)

정부가 '공정사회, 공평과세' 실현의 일환으로 제도 시행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종교인 과세 방안을 정작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종교인 과세 방안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의결이 필요한 세법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시행령) 개정만으로 종교인

과세를 즉시 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 여부를 미루겠다는 입장이다. 오랜 시간 관행적으로 비과세된 종교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세 기술상 보완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 정부가 내세운 표면적인 이유다.

하지만 연초부터 종교인 과세 방안을 줄기차게 추진해온 정부가 갑작스레 연말 이후로 결정을 미루자, 대선을 앞두고 종교인들의 '표심(票心)'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일부러 늦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말 바꾸는 정부, 종교인 과세 '갈팡질팡'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종교인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은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빨리 이루고 예외 없이 소득에 대해 과세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과세돼야 하고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느슨하게 과세되거나 과세가 거의 안됐던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며 "지금 검토 중이고, 어떻게든 자꾸 미뤄놓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6년 국세청에서 기획재정부에 종교인 과세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이후 6년째 미뤄왔던 문제를 과세당국 수장이 직접 거론하며,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박 장관은 세법개정안 발표시 종교인 과세를 위해 상당한 적응과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5개월만에 말을 바꿨다. 그는 지난 8일 열린 2012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종교인 등을 불문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납세의무가 따른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바로 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적응과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종교계와 좀 더 협의해 시간을 두고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종교인 소득을 전면 과세할 경우 세무행정상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고, 최근 자진납세 결의를 하고 있는 종교계와도 추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유권자 절반이 종교신자, "표가 열만데..."

종교인 소득을 과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과세 기술상 보완할 부분이 많다는 점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연말 대선을 앞두고 종교계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역력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3월 발표한 '한국의 종교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53.08%가 종교를 갖고 있다. 종교별 신자 비율은 불교 43%, 기독교 34.5%, 천주교 20.6% 등의 순으로 많았다. 특히 과세 전환시 소득세를 직접 납부해야하는 종교인(교직자) 수도 개신교 14만 483명, 불교 4만6905명, 천주교 1만5918명 등으로 20만명을 훌쩍 넘는다. 인구 절반이 종교신자인 상황에서 연말 대선을 코앞에 두고 선불리 종교인 과세를 추진할 경우 상당 수 유권자들의 표심(票心)을 잃게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세법개정안 발표 전에 새누리당과 재정부가 실시한 당·정 협의에서 종교인 과세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았고,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큰 정치일정을 앞둔 정기국회에서 비과세·감면의 대폭 정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됐다"며 "단계적으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

했지만, 이번 정부에서 몇 년 뒤의 세제까지 안을 내는 것이 무리라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 시행령만 개정하면 'O.K'... "연말에는 결정될까?"

정부가 종교인 과세 시행을 또 다시 연기하기로 결정하자 조세전문가들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세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종교인들도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세법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복무 중인 군인(병)이 받는 급여, 요양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으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종교인 과세 방안은 세법에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종교인 비과세 관행만 바로 잡아 세금을 과세하면 그만이라는 설명이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학교 교수)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종교인 소득이 열거돼 있지 않다"며 "세법에는 종교인들도 과세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현재 국세행정 차원에서 종교인들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어 공평과세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과세당국에 따르면 현행 세법 규정상 종교인 급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으므로, 시행령을 통해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실제로 재정부는 종교인 과세 시행 방안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시행령에 '종교 종사자가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규정을 명시, 종교인 급여 등의 근로소득 포함 논쟁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종교인 과세 방안으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종교인들이 받는 소득도 근로소득에 당연히 포함된다는 문구를 시행령에 담는 방법이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종교인 과세는 기본적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며 "종교계 자체가 자정해 납세결의를 하고 있으므로 연말까지 협의를 진전시켜 반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세법에 종교인의 소득에 대하여 명문화된 비과세규정은 없다. 따라서 현재까지 관례적으로 과세를 유예시켜온 것이므로 세법의 보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과세유예한 과세관청의 언동으로 표시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하여 과세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개별적인 자료처리에 있어서 과세당국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정상적으로 처리해오고 있으므로 이 또한 부당한 과세의 가능성은 적다.

다만, 성직자의 사례비에 대한 무분별한 과세가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직자에게 지급되는 선교비, 구제비, 목회활동비 등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인 성격 등의 비과세규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체계 / * 개인 또는 영리법인과 의 형평성유지

개인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각 원천별로 열거하여 과세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 영리사업
	비공익사업	공익사업	

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의 구분기장(수익사업, 고유목적사업/(공익사업, 비공익사업))
2. 수익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영리법인과 비교)
3. 고유목적사업용 자금조달
 - 내부에서 자원조달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 외부에서 자원조달 : 지급자에 대하여 지정기부금 처리 허용
4. 비영리법인의 중 영세한 비영리법인 ==> 개인과의 형평성유지(소정의 사업소득)
 - 이자소득 : 개인처럼 취급하여 분리과세 허용
 - 토지, 건물, 주식·출자지분 양도소득 : 개인처럼 취급하여 양도소득 특례허용
5. 비영리법인 해산시 그 재산은 국가나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 : 청산소득과세할 필요없음
 - 개인은 상속인에게 상속세, 법인은 주주에게 분배되므로 청산소득, 의제배당
6. 비영리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 고유목적사업에 출연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개인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출연재산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하고 사후관리한다.

(개인은 사업소득, 증여세, 법인은 각사업연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됨)
- 0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주식, 출자지분도 포함, 부동산(토지, 건물))
- 0 고정자산 처분

	① 고유목적사업 3년이상	② 고유목적사업 3년 미만	③ 공익사업출연재산
부동산	×	원칙적으로 과세하고 예외적으로 자산양도차익특례 운영됨	상증법에서 사후관리
기계장비	×	○	

0 상속세 :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에게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유증²⁾, 사인증여³⁾포함)

2) 유증 :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

- 재산상속순위 : ①직계비속 -> ② 직계존속 -> ③ 형제자매 -> ④ 4촌이내의 방계혈족(배우자①②)

▣ 관련예규·판례

【제목】
성직자가 받는 소득이 고용관계의 근로대가인 경우 갑근세 징수대상이며 교회 등 종교단체 소득이 수익사업 등의 소득인 경우 법인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법인46013-907, 1997.4.1)

【질의】
목사, 전도사, 분명 그들도 국민의 한사람이고 엄연히 월급으로 살아가는데, 과거 어려운 시절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이 사람들도 진정한 성직자고 국민이며 마땅히 국가는 세금을 부과하여야 함.

이제 교회는 면세할 만큼 비영리단체가 아님. 왜냐하면, 그들도 신도들을 통해서 엄청난 현금을 걷어들이고 있으며, 이러한 돈은 거의가 불우한 이웃을 위해 쓰여지기보다는 사람들의 생활비와 교회건축, 그리고 세 확장에 투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회도 세무감찰을 받아야 하고 또 신도들의 현금 총 액수를 밝혀야 하며, 그 사용처도 밝혀져야 함. 국민은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음.

1. 현재 교회에 갑근세, 부가세, 기타 어떤 세금을 부가하는지.
2. 만약 면세라면 어떤 근거에서 그런지.

【회신】
성직자가 받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갑종근로소득세 징수대상이 되는 것이며, 교회 등 종교단체의 소득이 법인세법 제1조,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인 경우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문서번호] 소득세과-2323 (2008.7.11) 세목 소득

[제 목]
목사가 교회로부터 받는 퇴직금 및 사례금에 대한 소득구분

[요 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받는 퇴직수당기타 이와

3) 사인증여 :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 없는 자가 강연을 하고 받는 보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아래의 질의회신사례 및 붙임 자료를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서면1팀-240, 2008.02.26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하 생략)

○ 제도46011-12420, 2001.07.26

【제목】

종교단체인 ‘교회’에 대한 과세여부와 목사, 전도사 등과 교회 관리인 등이 교회로부터 지급받는 사례비 등에 대한 소득구분 방법 등

【질의】

1. 공동체인 교회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는 경우는 있는지.(관련세법)
2. 교회 공동체에서 직업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사례비에 대해서 소득세는 내야 되는지(목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예배당 관리인, 교회버스 운전인). (관련세법)
3. 기타 타 교회에 강사로(부흥사) 나가 강사비로 받는 사례비는 세금을 내야 되는지. (관련세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 46011-1496, 1993. 5. 24, 소득 46011-10122, 2001. 2. 14 및 소득 46011-21170, 2000. 9. 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 바랍니다.

○ 사실관계

- 군산에서 작은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목회를 하던 중 건강상 이유로 사임하여 전체 교인들의 회의결과에 의하여 교회 소유의 토지를 퇴직금 및 사례금 명목으로 받아 목사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

○ 질의요지

목사가 교회로부터 퇴직금 및 사례금 명목으로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10122, 2001.02.14

【질의】

A목사는 다른 소득 및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M교회의 부목사로서 고용 또는 근로에 관해 문서상의 계약은 없어 목회활동의 대가로서 매월 85만원 및 연4회(매분기당) 각 85만원 등 총 1,400만원을 생활비명목으로, 또 월 14만원씩 총 168만원을 목회연구비명목으로 M교회로부터 2000년도 중 지급받았는 바 이 경우 A목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로 볼 수 있는지 및 동 수령금액이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신】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

○ 소득46011-21170, 2000.09.22

1. 고용관계 없는 자가 세미나, 연수회 등에서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세미나 등을 위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같은 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사업적으로 세미나, 연수회의를 개최하고 수입을 얻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동일병과의 의사 등이 실비를 각출하여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그 각출금은 행사를 주관하는 자의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이 경우 연수비는 소득세법 제52조에 규정한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심2003중2325, 2003.12.01

【주문】

○○세무서장이 2003.2.10. 청구교회에게 한 2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110,960,8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교회의 “교역자 사례금 등 지급규정”의 제8조 제1항에 의해 퇴직소득금액을 산출하고 나머지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한다.

【이유】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교회에게 2000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하여 처분한 쟁점금액 중 14,246천원은 청구외 ○○○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사례금으로 1999년도의 3,446천원과 2000.1~9월 까지 10,800천원을 지급한 것이며, 나머지 300,000천원은 청구외 ○○○목사가 중국선교사로 파송이 예상되어 앞으로 지급하게 될 퇴직금을 합병전에 교회 제직회의 결의에 따라 공로금 또는 주택구입 자금 지원형식으로 선지급한 것으로 처분청이 담임목사가 퇴직금을 사례금으로 잘못 표현한 것을 근거로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을 담임목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1977.8월부터 매일 지급하지 못한 사례금 등과 추 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상당액을 공로금 또는 주택구입비 명목으로 선지급하였다는 청구교회의 주장을 검토해 보면, 조사시 교회 담임목사가 작성한 확인서에 23년간 수행한 교회 시무활동의 사례금조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2호, 9호에 의한 근로소득으로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담임목사에게 지급한 사례금 314,246천원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교회의 합병전인 △△△제자교회에서 2000년도에 담임목사인 청구의 ○○○목사에게 공로금 또는 주택구입자금 형식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을, 처분청이 탈세제보에 의해 조사하여 청구의 ○○○목사로부터 쟁점금액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징취하여 청구법인에게 2003.2.10. 2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110,960,82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교회는 이에 대해 쟁점금액 중 14,246천원은 청구의 ○○○목사에게 1999년도 3,446천원과 2000년도 10,800천원의 미지급 사례금을 지급한 것이며, 나머지 300,000천원은 청구의 ○○○목사가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예상되어 앞으로 지급하게 될 퇴직금을 합병전에 교회 제직회의 결의에 따라 공로금 또는 주택구입 자금 지원형식으로 선지급한 것인 바, 청구의 ○○○목사가 확인서 작성시 세무지식 부족으로 인해 소득구분을 할 수 없어 퇴직금을 사례금으로 잘못 표현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교역자 사례금 등 지급규정, 확인서, 생활비 지급 결의안, 재직증명서, 제직회 회의록, 교회이전에 관한 회계보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청구의 ○○○목사는 1977.8월 ‘구□□□□교회’의 목사로 부임하였고 2000.1.9. 구□□□□교회와 ◇◇제자교회가 합병하여 ‘△△△제자교회’로 개칭한 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였으며, 2001.12.2.에는 ‘△△△제자교회’와 ‘☆☆☆교회’가 합병하여 현재의 ‘×××교회’로 개칭한 후 공동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2002.3.1. 퇴직하였으므로 청구교회에서 25년간 목사로 재직하였음이 청구교회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교회의 전신인 구□□□□교회는 1996.11.3. “교역자 사례금 등 지급규정”을 제정하였으며 동 규정 제8조(퇴직금)의 제1항에 “교역자 등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월이 속하는 년도의 지급한 금액과 지급하여야 할 제 금액의 합계액의 10분의1을 근속년도로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근속기간중 교회부흥에 끼친 공이

지대한 교역자에게 재직회 결의로 결정되는 금액을 공로금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제자교회와 현재의 ×××교회에서도 계속 적용한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 중 3억원은 교역자 사례금 등 지급규정 제8조 제3항에 의해 공로금 명목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며 2002.3.1. 퇴직시는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처분청이 청구교회에 대한 조사당시 징취한 확인서와 구 □□교회 재직회 회의록 등에 의하면, 구□□□□교회의 건물을 양도하고 수원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16억원을 원천으로 하여 청구의 ○○○목사에게 주택구입 명목으로 3억원의 사례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퇴직을 전제로 하여 공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의 ○○○목사는 3억원을 지급받은 2002.3.1.에야 퇴직하였다.

(라) 청구교회의 “생활비 지급 결의안”과 2002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청구의 ○○○목사에게 은퇴시까지 매월 “사례비 200만원(상여금 400%), 목회활동비 60만원, 도서비 40만원, 차량운영비 30만원, 사택관리비 15만원, 전화료 8만원, 기타(쌀) 32kg”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 중 14,246천원은 미지급 사례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나, 3억원은 자금의 발생동기, 재직회회의록, 청구의 ○○○목사의 퇴직일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교회의 퇴직금 지급 규정인 “교역자 사례금 등 지급규정”의 제8조 제3항에 의한 공로금 명목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교회가 청구의 ○○○목사 퇴직시(2002.3.1.)에 별도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교회의 “교역자 사례금 등 지급규정”의 제8조 제1항에 의해 쟁점금액 중 퇴직금을 산출한 후 나머지는 근로소득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관련법령

◎ 근로소득의 범위

1) 급여 등(법20, 영38)

- 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②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④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근속수당·명절휴가비·연월차수당·승무수당·공무원의 연가보상비·정근수당 등

- ⑤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
 - ☞ 종속적인 고용관계 없이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별된다.
- ⑥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다만, 아래의 금액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월 10만원 한도내의 식대(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할 자가 지급받는 제복, 제모, 제화
 - 특수작업 또는 그 직장 내에서만 착용하는 피복(병원, 시험실, 금융기관, 공장, 광산등)
- ⑦ 기술수당·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⑧ 시간외 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출퇴근 교통비 명목 및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 포함
- ⑨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지역, 광구로 등록된 지역, 의료취약지구(의료인) 등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월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은 비과세 하는 실비변상적 급여임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월100만원 이내 금액(원양어업선박, 국외 등 항행선박 또는 국외등 건설현장 등에서 받는 급여는 월 150만원)은 비과세
- ⑩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받는 월정수당은 과세하나(서면1팀-586, 2006.5.4), 동법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을 위하여 지급받는 의정활동비와 공무 여비는 비과세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 급여성 대가

- ①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 ②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 포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 ③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실제소요 경비인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임.
 -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지 않는 자가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20만원 한도)은 비과세소득임.
- ④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 ⑤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기타 경제적 이익

- ① 교직원의 자녀에 대한 등록금 면제액
- ② 근로자가 부담할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 그 소득세액
- ③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택제공이익은 제외
- ④ 종업원이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⑤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 연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⑥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외 / ⑦항이하 생략

◎ 비과세 근로소득

- 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영12)
- 나.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영17의2)
- 다. 출산·보육수당(법12조3호)
- 라. 기타 비과세 되는 소득(법12)

- 마. 국외근로소득(영16)
- 바. 생산직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등(영17)
- 사.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0)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소득세법 시행령12)

-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무보수 위원(학술원·예술원회원 포함)이 받는 수당
-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 3) 일·숙직료, 여비
- 4) 자기차량운전보조금(영12조 3호)
- 5)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 6) 특수작업 또는 그 직장내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 7) 각종수당
 - 위험수당 등 ◦ 승선수당,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화재진화수당
 -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 8)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교원이 아닌 사무직원이 받는 유사금액은 과세) ②항 이하생략
- 9) 기자의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10)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 ■ 발제 3

교회와 수익사업

박광현 회계사 / 우리회계법인

